

한옥건축기준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한옥은 규정될 수 있는가?

한옥이라는 용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한국어로서 국어사전에 수록되는 ‘사건’은 1970년대 중반까지 내려온다. 『새우리말 큰 사전』(삼성출판사, 1975)에 보면,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되었다.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한옥의 정의 중에서 위 정의를 넘어서는 설명은 찾기 힘들다. 한옥은 정확하게 양옥에 대응하는 말로 정의된 것이고, 양옥과는 다른 건축 전통의 기원을 가리키기 위해 선정된 말이다. 그러나 딱이 지점까지만 정의될 수 있다. 한옥의 정의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고유의 양식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고유의 양식’ 따위는 법률로써 정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양식이라는 것의 실체는 복잡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반을 두는 근거에 따라 또는 그 의견이 도출되는 논리적 구조에 따라 설득력을 갖는 이론의 영역이다. 즉 한옥 고유의 양식이라는 주제는 영원히 탐구되고 발굴하고 논쟁하는 화두와 같은 개념으로, 특정한 지표로써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수천 년을 이어 내려 온 건축전통을 하나로 꿰는 불변의 특징은 거의 발견할 수도 없다. 서구 미술사에서 등장한 양식이라는 개념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시대를 한정한 다음 논의되는 미술적 특징이다. 이를 근거로 어쩌면 ‘백제 건축’이나 ‘구한말 건축’ 등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한 한옥의 필수요건을 몇 가지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여전히 어불성설이다.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전근대 시대의 좋은 건축문화의 속성을 추출해서 한옥을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항상 있어 왔다. 한국미술의 특징을 고찰하거나 한국건축의 교훈을 학습하려는 실천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예를 들어 ‘자연과의 조화’와 같은 개념들은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한옥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어떠한 속성 하나로써 한옥을 규정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많은 건축물들이 한옥의 호칭을 획득하지 못한 채 버려질 것이고, 이는 처음에 살펴보았던 양옥과 대비되는 한옥의 정의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연스러운 것도 인공적인 것도 모두 한옥의 속성이 될 수 있다. 즉 한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미학적 개념들조차 모든 한옥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옥을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현재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일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만약 한옥을 20세기 초의 상류층 주택 건축 정도로 압축해서 정의한다면 몇 가지 속성을 규정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문화재학에서 신라시대 건축,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맞추어 각종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처럼, 한옥 역시 특정한 시대와 용도를 지정한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갖추어야 할 속성이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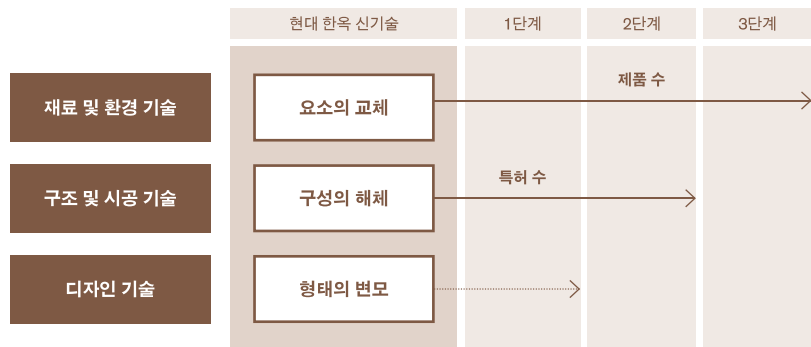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법률로써 한옥을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새로 짓기 위해서이다. 새로 짓는 한옥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한옥을 현대의 삶에 맞추어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와지붕도 목구조도, 종이를 바른 창호나 황토를 바른 벽도 모두 개량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한옥의 필수요건은 한옥을 개량하는 사람들이, 혹은 한옥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로서 항상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새로 짓는 한옥의 형태에 정답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옥의 제도적 정의로부터 기준까지

그럼에도 한옥정책의 개시와 함께 한옥을 법률로써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책대상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책대상으로서 한옥의 정의는 고유의 양식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보다 확실한 형태적 지표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었으며, 긴 논의 끝에 재료와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2008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되었다. 목구조와 한식지붕틀, 자연재료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짓는 한옥은 이미 이러한 규정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였다. 가장 먼저 교체된 것은 재료였다. 벽체와 지붕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고, 철제 프레임을 갖는 시스템 창호가 부착되었다. 깨끗하게 다듬은 초석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직접 놓이는 일이 늘어났으며 신소재 경량 기와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전통구들 대신 온수보일러의 파이프를 깔고 시멘트로 마감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된 관습이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목조 뼈대에도 실험이 시작되었다. 잘 말린 소나무 원목 대신 변이가 적고 강도가 안정적인 집성목을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났고, 이때 결구는 전통적인 장부맞춤이 아니라 철골처럼 금속 볼트를 끼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더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뼈대를 철골로 구성하고 그 겉면을 목재로 감싸는 기법들도 특허를 받았다. 재료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구조방식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현대 한옥기술의 발달 정도



자료: 이강민 외, 「최근 한옥기술에 대한 인식변화 및 특허·제품 등 개발 동향」, 한옥정책BRIEF 제33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4.12.

이에 따라 2014년에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의 정의는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완화되었다. 재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구조 방식에도 여지가 생겼다.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라는 것은 주요하지 않은 구조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로, 새로운 구조 방식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한옥 정의의 다음 단계에서는 구조 부분마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글의 서두에서 보았던 최초의 한옥 정의로 돌아가게 된다. 즉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이 한옥이며, 그 고유의 양식이라는 것에는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한옥의 제도적 정의의 역사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옥건축기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옥의 제도적 정의는 불가능함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옥의 정의에서는 필연적으로 형태와 재료, 구조 등이 삭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한옥정책의 대상을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에서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한옥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여러 건축물 중에서 특별히 한옥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상황이 특수한 것처럼, 한옥건축의 특징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 경관 등은 이미 타 법률 및 기준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옥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까닭은 특별히 한옥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옥건축기준은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옥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건축물에서 공공성을 지니는 외관을 중심으로 형태를 규정하게 된다. 이때 형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정도이므로, 한옥건축의 다양한 사례들의 향방에 맞추어 바뀌어나갈 수 있다.

한옥건축기준(안)의 주요 내용

한옥건축기준 고시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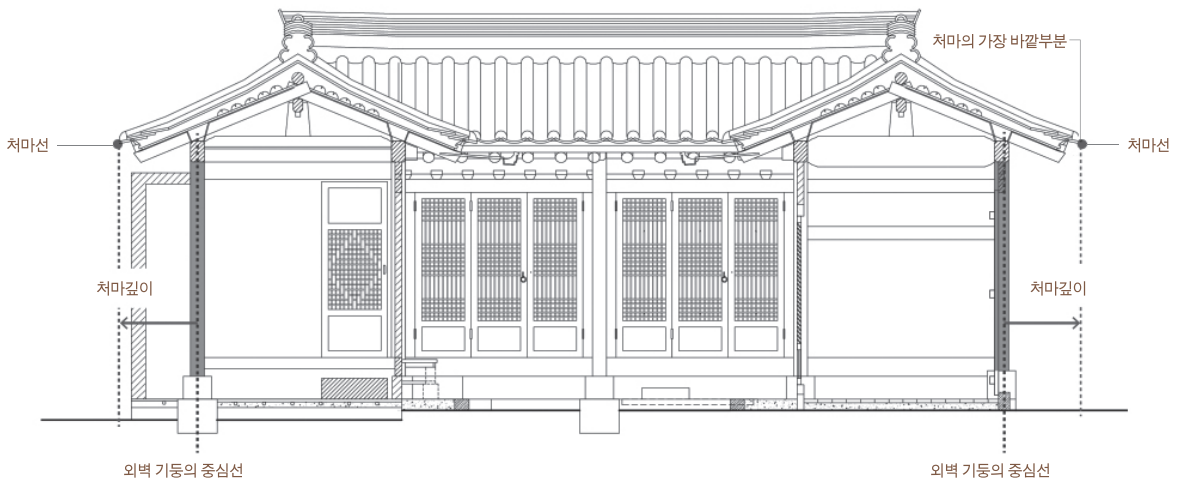
한옥건축기준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옥건축기준은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한옥의 물리적 형태 등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 지점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논쟁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용어의 정의

한옥건축기준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던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였다. 먼저 ‘한식지붕틀’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지붕구조로 정의하였다. 한식지붕틀의 규모와 형식은 도리의 개수에 따라 3량가와 5량가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치수와 접합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다음으로 ‘처마선’과 ‘처마깊이’를 정의하였다. 처마선은 처마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으로, 한옥지붕의 특징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을 지닌다.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의 중심선에서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들이다. 처마선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처마깊이 또한 지점마다 다르다. 처마선과 처마깊이를 특별히 정의한 것은 이들이 현대 「건축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이다.

처마선과 처마깊이의 정의



주요 구조부의 대체 재료

한옥건축은 목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조부재의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하층, 지상층 바닥, 계단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 사용을 용인하였다. 또한 기둥과 한식지붕틀의 구조부재의 일부를 철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대생활의 다변화된 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주한옥마을의 ‘소리문화관’은 대청에서 원활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기둥을 생략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기둥 10개, 대들보 3개, 창방 2개를 철골로 대체하여 큰 공간을 만들었다. H형 단면을 갖는 철골은 바깥을 목재로 감쌌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외관에서 철물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특별한 수요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에서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의 경우에도 새로운 공간형식이 개발될 만한 조건이 되므로, 목재 이외의 구조부재에 대한 개수와 비율을 정해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주 소리문화관의 대청(철골 구조의 혼합)



©전주한옥마을연구소, 사진:한옥원리

목재의 등급과 처리

한옥건축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목재의 성능에 대해 처음으로 관리 규정을 두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목재이용법의 시행 이후 산림청에서 각종 목재 제품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인증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용 목재에 대한 절차가 201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옥건축기준을 준수한 한옥건축에 불량 목재가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 즉 구부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성능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밖에 목재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처리를 명문화하였다.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을 도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처마깊이와 기와의 형태

지붕의 형태와 비례, 재료와 색상은 한옥건축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특히 처마깊이는 한옥의 미학적 특징에 더해 목재의 부식 방지와 실내공간의 일사조절 등 구조적 환경적 성능과도 관계가 깊다.

한옥건축기준에서는 처마깊이를 전국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최소 90cm 이상으로 정하였다. 지붕의 재료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채용되는 기와지붕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었다. 한옥의 지붕을 기와지붕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식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분리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기와의 경량화, 시공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재료와의 접합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현대 한식기와 개발 사례



경량 신소재 기와

자료: 한옥기술개발연구단, 2013.



일체형 기와

자료: 전라남도청, 2013.

외벽, 창호, 담장 등 외관

한옥건축기준에서는 한옥 실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한옥건축기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시행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준은 외관에 집중한다. 지붕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외관은 외벽과 담장이다. 외벽에서 기둥·인방·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옥의 비례와 구조적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도 목재 등이 노출되어 각 층이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어 설치하도록 해서, 벽면에서 입체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로에 면한 담장은 해당 한옥의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가 2.1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한옥 지붕이 갖는 아름다움이 가로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사지에서 집 안이 쉽게 들여다보이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붕을 가리지 않는다면 높이를 2.1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구성, 안전, 에너지 성능 등

한옥건축기준에서 성능에 관한 수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 결과이다. 먼저 한옥건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현 상황에서 한옥건축의 성능기준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

제였다. 목재와 황토 등 전통재료에 대한 표준 성능지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업계에 혼동을 야기할 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옥건축기준의 성능기준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며, 현 한옥건축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점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눈썹지붕을 달 경우 안전을 고려하고, 단열재의 이음 부위를 신경 쓰며,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에너지 효율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지역 사정의 고려

한옥건축기준이 전국에 지어지는 다양한 한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지역적인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전략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 개수와 비중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와의 형태와 처마깊이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서울 도심에 지어지는 한옥의 경우 좁은 필지의 제약으로 처마깊이가 60cm 내외로 정해지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처마깊이를 60cm 이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나아가 지역색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마깊이가 짧은 서울 북촌한옥마을의 가로경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사진: 임의필

한옥건축기준의 활용 및 전망

한옥건축기준은 곧바로 일선 한옥지원정책 시행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건축 민원들이 한옥건축의 지원범위를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한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한옥건축기준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역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심의기준을 수립해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새로 한옥정책을 시작하는 지역에서는 최소 기준으로서 한옥건축기준의 취지와 의미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지역 한옥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자체 심의기준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도 한옥건축기준의 고시를 계기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부분을 선정하고 고도화할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옥을 짓고자 하는 국민들이 미리 복잡한 심의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한옥건축기준은 한옥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옥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와 재료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재 복원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옥건축기준에는 한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축 실험들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제약을 점차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기준의 운용 실무에서 발생할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되면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강한 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준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옥건축기준은 한옥진흥정책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 1 전봉희·이강민, 「한옥의 정의와 범위」, 한옥정책BRIEF 제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1. 11.
- 2 이강민·심경미·박민정·이세진,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1-한옥미학의 기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 3 이강민·심경미·박민정·이세진,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4 이강민·오성훈·구본현·김꽃송이, 「현대 한옥기술의 변화와 전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